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김 윤 수

나. 생년월일: 1967.06.09.

다. 소 속: 한맥감정평가사사무소

(전북 전주시 완산구 만내3길 7)

2. 징계내용

가. 징계종류: 업무정지 2월

나. 효력발생일: '22.11.01. ~ 12.31.

다. 사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,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을 부적정하게 하였으며,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 사례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국토교통부장관